



국민의 福祉向上과 더불어 점차 增大되는 醫療需要는 醫療保險制度의 擴大實施와 함께 國民에 대한 醫療施惠를 점차 充足시켜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 急増하는 醫療需要와 함께 醫療에 대한 選好度에 비해 醫療機關의 發展은 現實情을 勘案한 醫療制度上의 各種問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實情에 처해 있다.

本會는 이에 특히 病院諸稅面에 關心을 갖고 病院稅制欄을 마련하여 病院運營 發展에 一助가 되고자 하오니 회원병원의 많은 參與를 바라는 바입니다.

相談 : 鄭 基 善

서울대병원 부설병원연구소 자문연구  
위원·공인회계사

柳 泰 鉉

공인회계사·正宇會計法人

〔問〕 個人病院을 醫療法人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轉換에 따른 稅務上의 問題點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K병원)

〔答〕 (1) 國稅庁은 營利·非營利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진 事業體는 法人體로 전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外形(醫療收益規模)이 커진 醫院 또는 病院이 個人形態로 계속 남아있게 되면 法人體에 비하여 여러가지로 稅務上 不利益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稅務調査를 더 철저히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稅務査察까지도 하기 때문에 많은 個人形態의 病院 經營陣들은 醫療法人化 問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問議하신 내용은 稅法上의 問題에 국한하였으나 醫療法上의 問題點에 대하여도 아는 한도 까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 먼저 稅法上 問題點의 첫번째 사항으로 同一한 所得(課稅標準)에 대하여 稅負擔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입니다.

예로서 1억원의 과세표준인 경우를 가지고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綜合所得稅(個人形態의 경우로서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1인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 총소득..... 100,000,000원

○ 공제소득..... 960,000원

— 기본공제 300,000원

— 배우자공제 420,000원

— 부양가족공제 240,000원

○ 所得金額(과세표준).....99,040,000원

○ 所得稅等

— 소득세

$22,376,000 + 39,040,000 \times 55\% = 41,896,000$ 원

— 방위세

$41,896,000 \times 20\% = 8,379,200$ 원

— 주민세

$41,896,000 \times 7.5\% = 3,142,200$ 원

所得稅等 合計 53,417,000원

(担稅率 53,417%)

나. 法人稅(醫療法人이 된 경우)

— 법인세

$50,000,000 \times 20\% = 10,000,000$ 원

$50,000,000 \times 27\% = 13,500,000$ 원

계 23,500,000원

— 방위세

$23,500,000 \times 20\% = 4,700,000$ 원

— 주민세

$23,500,000 \times 7.5\% = 1,762,500$ 원

法人稅等 合計 29,962,500원

(担稅率 29.93%)

다. 稅負擔 差異

53,417,000 - 29,962,500 = 23,454,500원

위의 계산과 같이 醫療法人이 되면 稅負擔額은 1억원의 所得에 대하여 23,454,500원이 나 줄어들게 됩니다.

(3) 그러나 個人病院의 경우에는 1억원에서 종합소득세 53,417,000원을 납부한 잔액인 46,583,000원은 可処分所得이 되나, 醫療法人의 경우는 1억원에서 法人稅등 29,962,500원을 차감한 70,037,500원이 法人內에 留保되어야 하고 賞与処分이나 贈与, 配當등으로 처분될 수 없기 때문에 可処分所得이 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個人病院에서는 資産에서 負債를 차감한 것이 資本(出資者 持分)이 되며, 이 資本에서 필요한 만큼은 아무 때나 引出하였다가 病院에서 돈이 필요하면 移入을 하므로 資本額은 매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資本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法人의 경우에는 일단 出捐한 金額이 資本 성질의 基本金이 되며, 引出額은 出捐者가 法人으로 부터 借入한 것이므로 任員從業員短期貸与金 計定(흔히 仮拂金이라 함)에 나타내고, 移入額은 法人에 빌려준 금액이므로 任員從業員短期借入金(흔히 仮受金이라 함) 計定에 나타내며, 만약 利益이나 缺損이 나더라도 이는 基本金에 혼합시키지 않고 아래와 같이 나타내게 됩니다.

(예) 基本金	10억원
당기결손액	△ 2억원
基本財産	8억원

따라서 法人의 경우 稅負擔은 줄어드나 利益의 処分權이 없다는 제약이 있는 점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4) 다음의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出捐者가 醫療人인가의 与否입니다.

현 醫療法 제 2조 제 1항에서는 醫療人을 醫師·齒科醫師·漢醫師·助産員 및 看護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相續稅法 제 8조의 2 및 同施行令 제 3조의 2등의 條項을 검토해보면 非醫療人이 出捐하고 理事가 된 경우에는 出捐한 金額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非醫療人이 法人에 참여하여야만 한다면

• 非醫療人이 出捐한 경우에는 理事職은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단, 理事가 아닌 監事나 行政院長등은 무방한 것으로 판단됨)

• 出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理事職을 맡아도 무방하다.

關係法規

質疑 다음에 해당하는 醫療法人이 상속세법상 公益法人에 해당되는지 与否

1. 의료법인의 理事中 비출연자인 醫療人이 있는 경우

2. 의료법인의 理事中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비의료인이 있는 경우

回答 (直稅 1234-2396 1975. 11. 4)

1. 상속세법 시행령 제 3조의 2 제 1항 제 1호 但書의 규정은 의료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자가 이사인 경우라도 그 출연자가 醫療法에 의한 의료인인 경우에는 公益法人에 해당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醫療法人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가. 非醫療人인 出捐者가 이사로 되어 있는 경우

나. 出捐者(의료인인 출연자도 포함)의 親族이나 出捐者와 特殊關係에 있는 者가 理事로 되어 있는 경우

(註) 따라서 위의 질의의 경우에는 公益事業에 해당됨.

贈与稅는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방위세를 포함하여 40,968,000원, 5억원인 경우 292,968,000원이며 그 이상은 60%의 稅率로 과세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위세가 20%가 추가되므로 최고세율은 72%에 달하고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만 합니다.

(5) 다음에 地方稅法上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取得稅와 財産稅는 事業目的(醫療業)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目的대로 사용하고 있는 財産에 대하여는 用途区分에 의해 取得稅와 財産稅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醫療業에 직접 사용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원장의 승용차나 간호원기숙사, 醫師宿所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課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소위 事實判斷에 의한 것으로 稅務公務員에게 裁量權이 주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事業目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據證資料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登錄稅의 경우에는 非營利公益法人인 醫療法人(財團法人포함)도 면세혜택이 없습니다. 더구나 地方稅法 제138조에 의하여 大都市內에 法人을 설립할 경우에는 등록세가 5배나 重課됩니다.

登錄稅率은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但書條項에 의거 1,000분의 8이 정당하나 區庁 또는 市·郡庁에서는 1,000분의 15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위에서 大都市의 범위에 대하여는 地方稅法令 제79조의 6에서 首都圈·釜山市·大邱市로 규정하고 있으며 首都圈에는 수원시·의정부시·부천시·안양시·성남시·광명시·楊州郡州內面·白石面·長興面과 같이 인접 여러군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재 保社部에서는 醫療法人設立時 出捐財産은 土地·建物·醫療器機등 모두를 포괄하여야 하며, 土地나 建物を 개인소유로 하고 나머지 財産만을 출연하는 것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土地·建物·醫療器機中 주요 항목이 基本財産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什器·備品이나 車輛등은 出捐할 수도 있고, 個人病院의 所有主와 醫療法人間에 賣買契約書를 작성하여 引受引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출연하였다면 그 재산은 普通財産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7) 만약 附加價值稅法 제6조의 제6항 및 同施行令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事業에 관한 모든 權利와 義務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個人病院이 職員들에게 빚으로 지고 있는 退職給與는 個人病院이 醫療法人이 되기 전에 계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醫療法人에 승계시킬 수도 있습니다.

**基本通則 2-6-3...(13)**

(個人企業으로 부터 인계받은 退職給與充當金の 승계) 사업을 包括承繼받은 法人의 승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이를 法人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이 경우 使用人의 근속년수는 개인기업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8) 出捐時 또는 個人病院과 醫療法人間의 賣買契約對象 資産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도내에서 評價額이 높을수록 나중에 減價償却을 통하여 節稅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建物이나 醫療器機등을 資産再評價法에 의거 재평가하여 出捐 또는 賣買契約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9) 다음에 醫療法上 주의하여야 할 점은 醫療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應急室과 그 이외에 법에 규정된 시설을 하여야 하며, 또한 同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宿直醫療人을 두어야 합니다. 귀병원의 경우는 이미 病院級이므로 변화가 없으나, 醫院에서 病院으로 승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일반적으로 個人形態의 병원경영주가 醫療法人으로 전환하는 것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自己가 이룩해 놓은 財産을 증여 또는 상속할 수 없으며, 또 財産의 処分時마다 保社部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処분에 따른 財産分配權을 갖지 못한다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醫療法人化한다면 증여는 불가능하나 상속은 실질적으로 後孫에게 상속세도

한편 안내고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利点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個人形態의 病院所有者는 醫療法人化를 거리고 있기 때문에 合名会社 (Partnership) 形態로 法人을 설립하는 길을 더 놓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病協의 의뢰로 병원연구소가 수행한 「中小規模病院經營實態調査研究報告書」 P.95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稅務問題가 政府에 건의되어 改正·發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 鄭基善)

〔題目〕 醫療法人의 所得計算에 관한 質疑.  
 醫療法人인 D病院에 근무하고 있는 경리실 무자 임니다. 一般法人과 달리 留意하여야 할 所得計算內容을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問〕 稅法上 醫療法人의 法人分類와 收益事業과 非收益事業의 区分內容中 留意 할 事項은 무엇인지요?

(강남구 청담동 D病院)

〔答〕 醫療法人은 法人稅法上 人格이 非營利法人이므로 반드시 收益事業의 去來行爲와 非收益事業의 去來內容을 分離하여 認識하여야 하는바 法人稅 基本通則 (1-1-8·(1))에서 提示하고 있는 收益事業과 非收益事業의 区分內容中 收益事業 또는 收入에서 생긴 所得으로 보지 아니하는 內容에 留意해야 합니다.

가. 固定資產을 交換·賣却 또는 任意評價함으로써 생긴 差益.

나. 預金, 積金, 會社債, 國公債의 利子과 割引額.

다. 證券投資信託의 利益과 同分配金.

라. 徵發補償金.

마. 著作權의 使用料로 받는 印稅收入.

바. 會員으로부터 받는 會費 또는 推薦手數料(刊行物等の 代價가 包含된 경우에는 그 代價相當額을 除外한다).

사. 外國援助收入 또는 救護基金收入.

上記內容을 追加的으로 解說하면

1) 醫療法人의 수익사업용 및 업무용으로 專用하던 고정자산(차량운반구, 공기기구, 비품 등 포함)의 매각차손익, 임의평가 차손익은 收益事業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例示 및 해석되고 있습니다(법인 1264, 21-1882, 84, 6, 7)

醫療法人의 基本目的이 營利追求에 있지 아니하고 該當特別法에 의하여 公益을 위해 設立된 特別한 目的의 法人이므로 營利를 目的으로 한 一般法人과 区分되는 것이며, 固定資產去來는 上記 基本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基本財産去來이므로 收益事業에 屬하지 아니하는 去來로 区分되는 것입니다.

다만 收益事業과 直接關聯하여 발생한 부수 수익(不用品 販賣代金), 例를 들면 廢資材 및 古物의 販賣收入은 收益事業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 됩니다.

② 預金, 積金, 會社債, 國公債의 利子와 割引額은 一切를 收益事業에서 발생되지 아니한 所得으로 区分하고 있는 바, 短期投資金融 會社에서 취급하고 있는 商業어음割引, 어음貸與金利子等도 預金利子에 포함하여 收益事業 所得에서 除外하고 있습니다.

③ 收益事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약금, 지체상금, 부금연체로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所得에 포함 되는 것이며, 위약배상금은 수익사업부분의 損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④ 收益事業과 非營利事業을 영위하는 非營利內國法人은 收益事業에 屬하는 것과 非營利事業에 屬하는 것을 別個의 會計로 区分하여 經理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法人稅法 施行令 第 2條 4項)

그러나, 非營利法人으로써 收益事業만 營爲하고 있는 경우는 企業會計上 利益 또는 損失內容中 “收益事業에서 생긴 所得으로 보지 않는 收益”은 稅務調整上 益金 또는 損金不算入하면 된다고 思料됩니다.

⑤ 非營利法人이 他法人에 出資한 投資有價証券을 保有하므로써 受領케 되는 利益配當金은 收益事業으로 分類되어 課稅케 됩니다. (法人稅法 施行令 第 2條 3項 6号)